

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(법인고객용)

【제1장 총칙】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KB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,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,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서비스"란 "오픈뱅킹공동업무"를 기반으로 "이용자"에게 제공되는 계좌조회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.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를 말합니다.
- 3. "운영기관"이란 "오픈뱅킹공동업무"를 운영·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.
- 4. "오픈뱅킹공동업무"란 은행이 다른 기관과 별도 제휴없이 "운영기관"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·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.
- 가. "잔액조회업무"란 "이용자"가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- 나. "거래내역조회업무"란 "이용자"가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- 5. "비밀번호"란 "이용자"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"이용자"가 설정하고 은행이 승인한 숫자의 조합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써 PIN을 포함합니다.
- 6. "PIN"이란 "이용자"가 "서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식별, 거래 승인을 위하여 직접 설정하고 입력하는 숫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.
- 7. "수수료"란 은행의 "서비스"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"이용자"에 기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3조 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"이용자"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합니다.
-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의 내용을 준용합니다.



제4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- ① 은행은 개별 "서비스"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"서비스"를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"서비스"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관련법령과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및 기타 개별 거래 약관 및 약정, 금융결제 원 「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」및 「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」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
【제2장 이용계약】

<제1절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>

제5조 (이용계약의 체결)

- ① 은행과 "이용자"사이의 "서비스"이용계약 (이하 "이용계약"이라고 합니다)은 "이용자"가 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합니다)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② "가입신청자"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제한됩니다.
- 1.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없거나 은행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- 2. "이용자"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
- 3.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
- ③ 은행은 "가입신청자"의 가입신청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이용계약의 해지)

- ① "이용자"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"이용자"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"이용자"가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 하는 경우
- 2. "이용자" 본인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
- 3.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4. "이용자"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
- 5. 다른 "이용자"의 권리나 명예,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③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"이용자"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사전에 통



지하며. "이용자"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제2절 이용자>

제7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
- ① 은행이 "이용자"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"이용자"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- ② 은행은 "이용자"가 등록한 거래 또는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일반사항을 "이용자"의 연락처로 통지 할 수 있으며, 수신자가 "이용자"본인이 아닌 경우, 그 수신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"이용자"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"이용자"본인에게 정당하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.
- ③ 은행은 "이용자"전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를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, 중대한 내용은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
제8조 (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)

-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"이용자"의 동의를 받아 "이용자"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.
- ② "이용자"는 은행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.

【제3장 서비스】

제9조 (서비스의 종류)

은행이 "이용자"에게 제공하는 "서비스"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잔액조회 :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.
- ② 거래내역 조회 :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(거래일시, 거래금액, 거래 후 잔액, 거래점명, 통장인자내용)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.
- ③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

제10조 (서비스의 제공)

- ① 제5조에 따라 은행이 "가입신청자"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"가입신청자"는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의 "이용자"가 되며, 이때부터 은행은 "이용자"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"서비스"를 제공합니다.
-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"서비스" 외에 추가적인 "서비스"를 제공하기 위하여 "이용자"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,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"이용자"는 추가적인 "서비스"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

제11조 (이용계좌)

"오픈뱅킹공동업무"에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「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」에서 정의한 계좌 중 계좌 개설기관을 통해 별도로 금융정보 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완료한 계좌에 한합니다.

제12조 (인증)

- ① "이용자"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 융거래의 종류, 성격,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② "서비스"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OTP 발생기 인증 등(이하 "인증수단"이라 합니다)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.
- 1, "이용자"는 "인증수단"을 철저히 관리하고,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.

제13조 (서비스의 중단)

- ① "서비스"의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00시 10분부터 23시50분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서비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」의 거래제한 사유를 준용합니다.
- 1. "운영기관"의 시스템 점검시간
- 2. 개별서비스 점검,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상의 필요
- 3.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증설, 교체,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
- 4.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5. 기타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해킹, DDOS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- 6.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"서비스"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수 있습니다.
- ③ "서비스"는 관련 법령,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【제4장 수수료】



제14조 (수수료)

- ① 은행은 "이용자"의 "서비스" 이용에 따른 "수수료"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"수수료" 내용 및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수수료 변경 시 제3조를 준용합니다.

【제5장 준수사항】

제15조 (준수사항)

- ① "이용자"는 "서비스"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, 약관, 세부이용지침,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안전한 "서비스"이용을 위하여 "이용자"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- 1.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"서비스"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
- 2. 타인의 명의, 계좌 정보, 인증수단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를 이용하는 행위
- 3.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4.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
- 5.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6. 은행이 제공하는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7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"서비스"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8. "서비스"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9. 은행의 "서비스"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
- 10.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·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
- ② "이용자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.
- 1.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
- 2. 비밀번호, PIN번호 등의 누설
- 3. 접근매체의 훼손, 도난, 분실,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
- ③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"이용자"의 "서비스"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"이용자"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

제 16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"이용자"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"이용자"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"이용자"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아니합니다.
- 1. "이용자"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(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
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"이용자"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"이용자"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3.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"이용자"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"이용자"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4. "이용자"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-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
제 17조 (은행의 의무)

-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"이용자"가 제공한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, 철저한 보안으로 "이용자"의 정보를 보호합니다.

【제6장 보칙】

제18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① "이용자"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



-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"이용자"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,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④ 분쟁사항 중 "운영기관"과 관련된 사항은 "운영기관"의 처리기준에 따라 "운영기관"에서 직접 대응 가능하며, 이 경우 은행과 "운영기관"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내용을 준용합니다.

제19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
-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부칙 (2025.1.2)

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5.1.2부터 시행한다.